인도, 농산물 수출기구

김윤식*

인도의 농산물 수출은 농산물협동유통연맹(NAFED: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Marketing Federation)에 의해 주로 이루어진다. 이 조직은 1958년 10월 2일 설립된 이후, 최근까지 농산물 수출 및 인도내 주(洲)간 거래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농산물의 수출을 포함하여 인도 농업에서 NAFED는 가장 중요한 조직 중의 하나이다. NAFED는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통 및 수출입에 관한 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의 농업협동조합과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결합한 것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금융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금융부분을 제외하면 우리 나라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수산물유통공사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도에서의 농산물 유통 및 수출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NAFED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농산물협동유통연맹(NAFED)의 목적과 역할

NAFED는 조직화된 농산물 유통을 통해 농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洲)간 상호협력법(Multi-State Cooperative Societies Act)'에 근거하여 1958년에 설립되었다. 농민들은 이 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회원이며, 농민들은 NAFED의 회원으로써 NAFED의 역할이나 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yunshik@krei.re.kr 02-3299-4383

한을 가지고 있다.

NAFED의 목표는, ① 농축산물의 유통・가공・저장을 조직・촉진・발전시키며, ② 농기계와 농자재 및 투입재를 보급하고, ③ 주(洲)간 거래 혹은 외국과의 수출입을 수행하며, ④ 농산물 생산에 기술적인 지원을 하며, ⑤ 농산물의 유통・가공・공급 사업을 협동조합 형태로 수행하는 데 있다. 그 외에도 NAFED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⑴ NAFED는 협동조합의 농산물 유통 및 무역을 지원하고 촉진시킬 수 있다.

⑵ NAFED는 회원들의 조직체, 정부 혹은 정부 조직을 대표하여 농산물의 주(洲)간 거래 혹은 외국과의 수출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곡물・원예농산물・임산물 등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구매・판매・수입・수출할 수 있다. 또한 주(洲)간 거래 혹은 외국과의 수출입시 단일 창구로써 정부 대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인도내 혹은 외국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⑶ NAFED는 농산물을 비롯하여, 유기질비료, 종자, 화학비료, 농기구 및 농기계, 포장기계, 가공기계 등의 구매 및 판매사업을 할 수 있다.

⑷ '보관창고법(Warehouse Act)'에 따라 NAFED는 농산물의 보관업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창고시설이나 저온저장시설을 소유 및 건축할 수 있다.

⑸ NAFED는 곡류, 원예농산물, 임산물, 육류, 울(wool), 농자재 등의 구매 및 판매, 저장, 분배를 위해 정부 대행업체 혹은 협동조합 대리인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⑹ NAFED는 보험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

⑺ NAFED는 협동조합 및 회원 농민의 혜택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다.

⑻ NAFED는 직접 투자를 하거나 다른 업체와 연합하여 농기계 및 농자재의 제조, 가공 및 포장 사업을 할 수 있다.

⑼ NAFED는 직접 투자를 하거나 인도내 자본 또는 외국 자본과 연합하여

다양한 품목의 저장시설을 설립할 수 있다.

⑽ NAFED는 직접 투자를 하거나 인도내 자본 또는 외국 자본과 연합하여 농산물의 수송에 필요한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⑾ NAFED는 상호 이익이 된다면,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 업체와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⑿ 유통과 관련된 연구를 할 수 있으며, 시장정보를 보급할 수 있다.

⒀ NAFED는 NAFED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다른 협동조합 또는 공기업체, 개입기업 등에 출자할 수 있다.

⒁ 유통, 가공, 공급 등의 협동조합 직원을 교육할 수 있다.

⒂ 유통, 가공, 공급 등의 사업에 필요한 핵심인력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⒃ 농산물, 원예산물, 임산물, 울(wool) 등의 가공에 필요한 가공시설을 설립할 수 있다.

⒄ 농산물의 등급, 포장, 표준화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⒅ NAFED는 운영상 토지, 건물, 차량 등을 구매 혹은 임대할 수 있으며, 자산을 매각, 임차할 수 있다.

⒆ NAFED는 농산물을 담보로 회원이나 다른 협동조합에 선불금을 지불할 수 있다.

⒇ NAFED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협업체나 기업체에 선불금 혹은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설 수 있다.

(21) NAFED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협업체나 기업체를 대리하여 선불금 혹은 대출 보증을 설 수 있다.

(22) 이상에서 제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다.

NAFED는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① Union Territories를 제외한 주에서 일반 목적의 유통협동조합(state-level marketing federation), ② Union Territories에서는 최상위 유통협동조직(apex-level cooperative marketing organisations), ③ 주된 역할이 농산물의 유통, 가공, 분배인 품목별 조합, 소수

민족 협동조합, 소수민족 협동개발공사 등의 특별조합, ④ 농산물의 유통, 가공, 분배 관련 사업을 하면서 이 분야 매출액이 5백만 루피 이상인 대규모 협동조합, ⑤ 소비자협동조합연맹(NCCF), 등이 회원이 된다.

2005년 3월 현재 네 번째 부류의 협동조합이 721개로 가장 많은데,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697개에서 1년 사이에 24개 증가하였다. 첫 번째와 세 번째 부류의 협동조합은 각각 25개와 22개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인도 정부도 NAFED의 회원이라는 점이다. 2005년 3월 현재 NAFED의 회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NAFED의 회원 구성, 2005년

NAFED 회원 구분	회원수
(1) State-level Marketing Federations	25
(2) Apex-level Marketing Federations	3
(3) State-level Tribe and Commodity Federations	22
(4) Primary Marketing/Processing Societies	721
(5) Government of India	1
(6) NCCF and other National-level Cooperative Organisations	2
합 계	774

자료: NAFED (www.nafed-india.com).

2. 농산물협동유통연맹(NAFED)의 사업 실적

NAFED의 사업은 국내사업, 정부대행사업, 농산물의 수출입, 자체 사업, 선물시장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1. NAFED의 국내사업

국내 사업은 크게 직접 거래, 회원조합과의 연합사업, 위탁판매사업, 정부대행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국내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수매사업이다. NAFED는 농산물 수매를 통해 농가에 도움을 주고,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가격이 급등할 때 수매농산물을 방출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NAFED 수매사업의 대상 품목은 곡물류, 펄스 콩, 채유용 종자, 양념류, 면화, 소수민족 고유 농산물, 황마(jute), 계란, 신선 과일과 채소류 등이다. NAFED는 농가가 가능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판매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양파, 감자, 계란 등 소비자에게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자 가격안정정책도 실시하고 있다. 2004～05년 직접 거래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2 NAFED의 국내사업 실적, 2004～05년

품 목	액수 (백만 루피)
곡물류	336.693
펄스 콩	5794.559
양념류 및 차류	405.680
유채류, 황마, 면화 등	1482.852
원예농산물	20.412
가금류	12.941
농업 투입재	178.316
산업 시설	40.582
기타사업 (종자, 비료, 설탕, 건조 과일, 소금 등)	1,322.990
기타	214.021
합 계	9,809.046

자료: NAFED (www.nafed-india.com).

다른 협동조합과의 연합사업은 2004～05년에는 채유용 종자 (oil seeds) 수매 사업만 있었다. 마드야 프라데시(Madhya Pradesh) 주의 MP MARKFED와의 연합사업으로 NAFED는 2,148톤의 황색콩(yellow soybeans)을 2,790만 루피에 구매하였다.

위탁판매사업의 주요 대상 품목은 신선 과일과 신선 채소이다. 2004～05년에 NAFED는 1,079만 루피의 신선과일과 채소를 취급하였으며, 21,908톤의 양파를 4,182만 루피에 판매하였다. 또한 황마와 그 부산물의 위탁판매사업으로 3억 6,230만 루피의 실적을 만들었다.

2.2. 정부대행사업

NAFED가 수행하고 있는 정부대행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유채류, 펄스콩, 면화 등에 적용되는 가격지지정책(PSS: Price Support Scheme)과 감자와 양파 등 소비자 민감품목에 적용되는 시장개입정책(MIS: Market Intervention Scheme)이다.

⑴ 가격지지정책(PSS: Price Support Scheme)

농산물 가격지지정책은 인도 농업정책 전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NAFED는 인도 정부의 가격지지정책의 대행업체로써 채유용 종자(oilseeds)와 펄스 콩(pulses)에 대하여 수매사업을 수행한다. 이 정책의 목적은 유채류와 펄스 콩 재배 농가가 생산을 지속·발전시킬 수 있도록 가격지지를 해 주는 데 있다. 이들 품목의 시장가격이 정부가 정한 가격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NAFED는 이들 품목을 수매한다. 2005년에는 NAFED가 면화에 대한 수매정책의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최저지지가격(MSP: Minimum Support Price)은 농업생산비 및 가격위원회(CACP: the Commission of Agricultural Costs and Prices)의 제안을 받아 정부가 최종 결정한다. 최저지지가격은 매년 갱신되며, 주요 품목의 최저지지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

최근 국제가격 및 국내가격이 하락하여 NAFED는 시장에 개입하여 상당량의 채유용 종자와 펄스 콩을 수매하여 재고량이 급증하고 있다. 2004～05년에도 풍작과 대량의 펄스 콩 수입으로 일부 채유용 종자의 가격이 정부의 최저지지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어 NAFED가 수매에 나섰다. 지난 해 NAFED의 수매실적은 겨자씨 40만톤(71억 3,060 루피), 새플라워 씨(Safflower seed) 8,942톤(1억 5,060만 루피), 해바라기 씨 2,347톤(3,150만 루피) 등이다. 일부 주에서 면화 가격이 정부의 최저지지가격보다 낮게 형성, 17,139톤(3억 2,520억 루피)을 수매하였다. 2004～05년 NAFED의 수매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3 인도의 주요 품목 최저지지가격, 2004～05년

품 목	최저지지가격(100kg당 루피)
Soybean (yellow)	1,010
Soybean (black)	900
Safflower Seed	1,550
Sunflower Seed	1,500
Groundnut Pods	1,520
Mustard Seed	1,700
Toria	1,665
Niger Seed	1,200
Sesame Seed	1,550
Copra (ball)	3,820
Copra (milling)	3,570
Moong	1,520
Urad	1,520
Arhar (toor)	1,400
Gram	1,425
Masur (lentils)	1,525
Cotton F-114/H-777/J-34	1,760
Cotton H-4	1,980

자료: NAFED (www.nafed-india.com).

표 4 가격지지정책에 따른 주요 품목의 NAFED 수매실적, 2004～05년

	수매량(톤)	수매액(백만루피)	해당 주[1)]
채유용 종자(oil seeds)	414,875	7,319.6	
- Mustard Seed & Toria	403,122	7,130.6	Rajasthan, UP, MP, Gujarat, Chhaittisgarh
- Sunflower Seed	2,393	31.5	Bihar, Karnataka
- Safflower Seed	8,942	150.6	Maharashtra, Karnataka, AP
- Groundnut Pods	418	6.9	UP
펄스(Pulse)	294,782	4,353.6	
- Gram	288,723	4,259.2	MP, AP, Guj, Maha., Raj, UP, Chhaittisgarh
- Masur	3,946	63.3	MP
- Urad	2,113	31.1	UP
면화(Cotton)	17,139	325.2	Guj, Punjab, MP, Maharastra
합 계	726,796	11,998.4	

주 : 1) 주의 간략 표기는 다음과 같다. UP (Upper Pradesh), MP (Madhya Pradesh), AP (Andhra Pradesh), Maha. (Maharashtra), Raj (Rajasthan).

자료 : NAFED (www.nafed-india.com).

⑵ 시장개입정책(MIS: Market Intervention Scheme)

특정 농산물이 생산 과잉으로 인해 가격이 폭락하여 주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도 정부는 시장개입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정부가 손실액의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여야 한다. 해당 주 정부의 요청이 접수되면 중앙정부의 농업부(DAC)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품목에 대한 시장개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004년 Rajasthan 주의 요청으로 농업부는 양파와 코리앤더 (corriander)에 대한 시장개입을 승인하였다. 농업부의 승인에 따라,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50:50 비율로 100kg당 280루피의 가격으로 5,000톤의 양파를 수매하였다. NAFED는 Rajasthan 주(洲) 대행기관인 RAJFED를 통해 647톤의 양파를 구매하였다. 코리앤더 씨의 경우에 NAFED가 80톤을 Rajasthan 주(洲)에서 수매하였다. NAFED는 농산물의 수매뿐만 아니라 주정부 수매 농산물의 판매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안드라 프라데쉬(Andhra Pradesh) 주에서 시장개입정책으로 수매한 1,353톤의 붉은 칠리(red chillies)의 판매를 도와주었다. 주요 품목에 대한 NAFED의 시장개입 실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인도의 시장개입정책에 따른 주요 품목의 수매실적

품 목	연 도	개입가격 (루피/100kg)	수매량 (톤)	수매액 (1,000루피)	해당 주정부[1)]
감자	2003-04	190	4,697	15,927	UP
양파	1996-97	300	60	198	Karnataka
계란	2001-02	100	31.75	3,270	AP
Kinoo/Malta	1993-94	350	3,133	4,949	HP, HAR, UP
후추	1993-94	3,300	1,491	49,525	Kerla
칠리	1997-98	2,250	8,123	19,001	AP
코리앤더	2004-05	1,450	80	1,248	Rajasthan

주 : 1) 주의 간략 표기는 다음과 같다. UP (Upper Pradesh), AP (Andhra Pradesh), HP (Himachal Pradesh), Har (Haryana).
자료 : NAFED (www.nafed-india.com).

2.2. 농산물 수출입

NAFED는 인도 농산물 수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양파의 경우, 1974년부터 1999년까지 NAFED는 양파의 유일한 수출 창구였다. 현재는 규정이 완화되어 주에서 운영하는 기업도 수출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NAFED를 통해 수출되는 양파의 물량이 전체 양파 수출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NAFED가 여전히 인도의 농산물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NAFED에서 농산물 수출입은 NAFED 산하 국제교역국(the International Trade Division)에서 수행한다. 국제교역국은 수출 관련 지속적인 연구와 병행하여, 새로운 수출 상품 발굴, 새로운 시장 개척, 기존 수출시장의 개선 등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다. 국제교역국에서 중점적으로 수출을 촉진하려고 하는 품목은 밀, 쌀 (바스마티, 비바스마티), 옥수수, 밀가루, 펄스 콩, 채유용 종자 (groundnut, 참깨 등), 대두, 캐스터 유(Castor), 천연고무, 양념 및 향료 등이다. 국제교역국은 국내 공급이 부족할 경우 수입도 하는데, 주요 수입 대상품목은 식용유, 펄스 콩, 설탕, 마늘 등이다.

NAFED는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지점이 있을 뿐 아니라 곳곳에 유통시설(보관창고, 냉장시설, 냉장차 등) 및 가공 시설(등급화 및 왁스 시설 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거래 혹은 수출시 생산지역에서 해당 품목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004~05년 주요 품목의 수출 실적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인도의 농산물 중 양파가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인도는 양파 수출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인도에서 양파 수출은 1999년까지 NAFED가 독점하다가 1999년 2월에 '수출입 정책(the Exim Policy)'이 수정되면서 주(洲)가 운영하는 기업(STEs: State Trading Enterprises)도 양파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정책이 추가 보완되면서 현재는 NAFED와 12개 주 운영

기업들이 물량 제한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12개 주 운영 기업들은 양파 수출 실적을 매주 NAFED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표 6 NAFED의 수출 실적, 2004~05년

품 목	수출물량(톤)	수출액(백만루피)
직접 수출	93,384	1,031.3
쌀	40,645	441.5
밀과 밀가루	23,100	210.9
양파	16,442	213.2
감자	3,000	52.1
천연고무	361	18.5
심황 (turmeric)	487	18.0
붉은 칠리고추	195	6.2
나이거 씨(Niger Seed)	452	10.2
대두유 (soya oil)	2,024	17.4
그라운드 커널(Groundnut kernel)	317	8.4
코리앤더 씨 (Corriander Seed)	105	2.1
마늘	151	4.9
마수르(Masur)	896	19.6
코코넛	4,860	0.8
면화	100	6.5
평지 씨 (Rapeseed Meal)	249	1.0
개인기업과의 연합 수출	315,043	1,915.3
밀	24,990	279.1
옥수수	24,530	167.6
캐스터 유 (Castor oil)	7,653	276.9
그라운드 넛 (Ground nut)	10,200	529.0
철광석 (Iron Ore)	247,251	654.0
B. Material	419	8.7
보조 유통업자 (Associate Shippers)		
양파	357,416	3,127.0
총 계	765,843	6,073.6

자료: NAFED (www.nafed-india.com).

양파와 관련하여 인도 중앙정부의 부처간 조정회의(Inter-Ministerial Review Committee) 산하에 물가위원회(the Cabinet Committee on Price)가 있다. 물가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중앙정부의 농업부, 소비자부, 상무부

및 NAFED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물가위원회는 양파 생산 상황을 평가하고, 도매가격 등의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3개월간 수출할 양파 물량을 결정한다. 물가위원회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측면에서 양파의 국내가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시장에 개입한다.

표 7 인도의 양파 수출 실적, 1975~2005년

연도	수출물량(톤)	수출액(백만루피)	수출단가(루피/톤)
1975-76	111,998	138.4	1,236
1980-81	193,658	276.8	1,429
1985-86	207,709	412.5	1,986
1990-91	289,054	1,159.1	4,010
1995-96	434,655	3,087.4	7,103
2000-01	330,207	3,236.2	9,801
2001-02	506,924	4,114.1	8,116
2002-03	580,951	4,391.9	7,560
2003-04	840,401	8,214.7	9,775
2004-05	941,449	8,174.9	8,683

자료: NAFED (www.nafed-india.com).

인도의 양파 수출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01년에 33만톤 정도가 수출되었지만, 2004~05년에는 이보다 세 배가 증가한 94만톤이 수출되었다. 이와 함께 수출액도 급증하였다. 2000~01년에 32억 루피 수준이던 수출액이 2004~05년에는 82억 루피까지 증가하였다. 인도 정부의 품질 개선 노력이 나타나 수출단가도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1990년대 톤당 4,000~5,000 루피였던 수출단가가 2000년 이후에는 2배 이상 상승한 톤당 8,000루피에 형성되고 있다.

양파의 최저수출가격(MEP: Minimum Export Price)은 농업부, 상무부, 국영기업(STEs), 보조 유통업자 등과 협의하고 국제시장 상황, 품질, 작황 전망, 운송비 등을 고려하여 매달 NAFED에 의해 결정된다. 최저수출가격은 품종과 수출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표 8 인도의 목적지별 양파의 최저수출가격, 2006. 6

목적지	운송 형태	최저수출가격(USD/톤, C&F)
걸프만		
두바이/샤라(Dubai/Sharjah)	벌크 컨테이너	165 170
두바이/샤라(Dubai/Sharjah)	벌크(from Mumbai)	135 (FOB)
도하/무스켓(Doha/Muscat)	컨테이너	180
바레인 다맘(Bahrain Damam)	벌크 컨테이너	180 195
쿠웨이트/예다(Kuwait/Jedah)	벌크 컨테이너	180 195
극동국가		
싱가포르	컨테이너	165
말레이지아	컨테이너	140
스리랑카	벌크/컨테이너	150
함부르크 (독일)	컨테이너	260
필리핀 (마닐라)	일반 컨테이너 냉장 컨테이너	175 210
그리스 (아테네)		235
방글라데시		150
파키스탄	벌크 컨테이너	145 165
인도네시아	일반 컨테이너 냉장 컨테이너	180 265

자료: NAFED (www.nafed-india.com).

인도의 주요 양파 수출지역은 중동 및 인근 아시아 지역이다. 하지만 일부 독일이나 그리스 및 아프리카 지역까지 양파가 수출되고 있다. 2006년 6월의 목적지별 양파 최저수출가격은 <표 8>과 같다.

수출 국가별로는 방글라데시와 말레이시아로의 수출이 가장 많다. 두 국가로의 수출물량이 전체 양파 수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표 9 인도의 양파 국별 수출 실적, 2000～04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U.A.E.	스리랑카	합계
2000	금액	14,491	17,830	8,094	10,171	57,382
	물량	95,402	93,530	55,900	68,663	352,060
2001	금액	12,679	20,893	12,434	11,650	65,951
	물량	83,956	105,415	72,424	75,230	383,589
2002	금액	9,234	22,336	14,307	14,505	73,793
	물량	63,009	138,484	116,510	115,631	533,607
2003	금액	34,113	31,459	13,016	14,222	107,991
	물량	204,516	185,808	103,198	107,232	716,157
2004	금액	72,173	31,695	20,805	17,064	161,247
	물량	370,836	173,118	119,747	98,327	874,969

주 : 여기에 인용된 수출실적과 <표 7>에서의 수출 실적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는 인용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표 7>은 NAFED 자료이며, <표 9>는 Global Trade Atlas의 자료이다.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인도 주요 농산물 수입가능성 분석」, p. 43.

참고자료

김윤식,「한・인도 CEPA 협상 대응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발췌정리